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03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손금주 · 손혜원 · 황주홍

김성찬 · 이양수 · 경대수

윤준호 · 김태흠 · 강석진

박주현 · 정운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정비사업에 착수하지”를 “정비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부속시설에”를 “부속시설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상함에 있어서는”을 “보상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를 각각 “시행할 때”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정함에 있어서”를 “지정할 때”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등기에 있어서”를 “등기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5. ----- -----부속시설과----- -----
16. ~ 23. (생 략)	16. ~ 23. (현행과 같음)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	24. -----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착수·변경</u> 의 신고	----- ----- ----- <u>시작</u> ----- ---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u>없는 한</u>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없으면</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u>보상함에 있어서는</u>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 ----- ----- ----- ----- ----- ----- ----- <u>보상할 때에는</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p>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u>일체의</u>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u>모</u> 든----- ----- -----. ----- ----- -----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p>	<p>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p>
<p>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u>지정함에</u>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정할 때</u> ----- ----- ----- ----- -----.</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의 귀속) ① ~ ④ (생 략)</p>	<p>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의 귀속)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의 <u>등기에</u> 있어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p>	<p>⑤ ----- ---<u>등기에서</u>----- ----- -----</p>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 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 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 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 ----- ----- ----- ----- ----- -----.
--	--